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1196 제출연월일 : 2024. 6. 28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그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64조제1항제1호 중 "제650조·제651조·제653조·제656조"를 "제650조·제651조·제656조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채무자가 제319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제653조를 삭제한다.

제66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319조, 제320조, 제322조 및 제578조의6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제564조제1 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제564조제1항제1호 및 제5 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64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.

제3조(벌칙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65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 혂 제564조(면책허가) ①법원은 다 제564조(면책허가) ①-----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 가하여야 한다. 1. 채무자가 제650조·제651조 1. ----- 제650조·제651 <u>• 제653조 • 제656조</u> 또는 제 조·제656조 -----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. ~ 5. (현행과 같음) 2. ~ 5. (생략) <신 설> 5의2. 채무자가 제319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 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 니한 때 6. (생략) 6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생 략) 제653조(구인불응죄) 제319조, 제 <삭 제> 320조, 제322조 및 제578조의6 에 <u>따른 구인의 명을 받은 자</u> 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 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 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

<u>다.</u> 제660조(과태료) ① ~ ③ (생

<신 설>

략)

제660조(과태료) ① ~ ③ (현행 과 같음)

④ 제319조, 제320조, 제322조 및 제578조의6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 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